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임원 결격 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법에 부합하도록 정비〉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32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임원 결격 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법에 부합하도록 정비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문금주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3. 25.
3. 회 부 일 : 2026. 3.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마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이자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임. 그러나 현행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회 도입 등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요건 및 책임을 명확화하고,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사항 및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규정하여 법률의 정합성 및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함(제25조제5호 삭제 등).

Ⅲ. 검토의견

1. 임원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법에 부합하도록 정비

개정안은 한국마사회의 임원 구성에서 상임감사를 삭제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며, 임원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과 부합하지 않는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임원) 마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 4. (생략) 5. <u>상임감사 1명</u>	제25조(임원) ----- -----. 1. ~ 4.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26조(임원의 직무) ① ~ ④ (생략) ⑤ <u>상임감사는 마사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집행상황을 감사한다.</u>	제26조(임원의 직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감사위원회는 마사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 2. (생략)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u>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u>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u>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u>

<u>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4. (생략) ②·③ (생략) 제31조(대표권의 제한) ① <u>마사회와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상임감사가</u> 마사회를 대표한다. ② (생략) 제32조(이사회) ① (생략) ② <u>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u> ③ ~ ⑦ (생략) ⑧ <u>상임감사는</u>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대표권의 제한) ① ----- ----- ----- ---<u>감사위원회</u>----- -.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u>이사회 의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되며,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의장이 주재한다.</u>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u>감사위원회</u>-----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현행법은 한국마사회 임원으로 마사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상임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사회와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 간에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감사가 마사회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사회와 관련해서

는 이사회 의장을 회장으로 하되, 상임감사에게도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아울러 임원의 결격사유로 공공기관 운영법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규정하고 있음.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산규모 2조 1,467억원¹⁾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임.

공공기관운영법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가 공기업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되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도록 하며, 선임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1) 한국마사회, 2024마사연감, 2025.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0조(위원회) ①공기업의 이사회는 그 공기업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같음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서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기업에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

③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감사위원회는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원) ①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제32조(임원의 직무 등)②기관장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표한다.

제18조(구성) ②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제21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u>제19조(회의) ①이사회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u> ② ~③ (생략) <u>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정안은 현행법상 상임감사 관련 규정 및 임원 결격사유를 공공기관 운영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이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되는 법임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현행법 및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및 선임비상임이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및 선임상임이사 임명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한국마사회 정관은 이미 공공기관운영법에 맞추어 임원 및 감사위원회 설치, 선임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상태임.

문 의 처
02)6788-5415

참고 1

마사회 정관

제18조(설치와 구성) ① 본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제6조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수가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제18조의2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의2(선임비상임이사) ① 본회에 선임비상임이사 1명을 둔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전과 그 밖에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 회의를 소집·주관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제12조(감사위원회의 대표권) ① 본회의 이익과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가 본회를 대표한다.

② 본회와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의3(감사위원회)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비상임이사이어야 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은 「상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③ 상임감사위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비상임이사인 감사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라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⑥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